

교하미곡종합처리장 양여 동의안

의안 번호	제1
----------	----

제출년월일 : 1998.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 안 이 유

- 미곡 종합 처리장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에 의거 정주권 개발 사업으로 '94년도에 설치후 행정재산으로 취득하고 교하단위 농협에 '95 ~ '97(3년간) 사용허가 한 결과 교하농협에서는 116,195천원의 사용료와 71,408천원의 수리를 하였음에도 수매물량 증가로 시설의 교체증설에 1,153,700천원의 시비를 요구하고 있어 본미곡처리장으로 인한 시비의 투자가 계속 되어야 할 실정.
- 지방재정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면 본미곡종합처리장은 행정재산으로 처분대상이 아니며, 용도폐지조차 명분이 없음으로 직접운영 또는 유상사용허가 만이 최선의 관리방법 이겠으나, 3년간 105,079천원의 결손운영을 경험한 교하농협에서는 계속사용허가 신청마저 기피하고 있어 미곡종합 처리장을 직영하지 않을경우 정주권개발 사업의 실효를 거양키 어려움.
- 농협의 계속사용기피 사정으로는 양곡관리법 제22조(미곡유통업의육성)에의거 농협등에서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정부의 농특회계 및 농업

경영 자금을 저리(5%수준)로 운영자금을 지원 받을수 있으며, 건조저장 시설 증설시에도 농특회계에서 보조175백만원(50%); 융자105백만원(30%)지원을 받을수 있으나 교하미곡처리장은 지원대상에서 배제가되고 있어 국가의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고 결손운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음.

- 미곡종합처리장(정미소)을 시에서 직접운영하는 것은 인력과 제도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본 미곡종합처리장을 농협이나 생산자 단체가 주체가 되어 설치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설치하여 행정 재산으로 취득후 농협에 사용허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보수비,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소유와 관리의 이원화로 적정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이 되지못할 뿐만아니라 비수익적 특정지역 특정시설에 막대한 시비의 계속투자 역시 시재정의적절한 운영이라 할수 없음 으로 교하농협에 양여하여 불합리한 시설의 관리 운영을 개선하여야 할 것임.
- 교하농협이 동시설 수탁관리를 기피하면서 동지역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무상양여 대책위등은 정주권 개발 사업으로 설치된 미곡종합처리장을 무상양여하여 줄것을 의회에 청원한바 있으나, 법적제도적으로 무상양여는 불가능함으로 농림부의 정주권개발사업지침에 의거 농림수산 관련 단체가 자체적으로 사업시행시 시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설부지자체 확보시) 시설비중 50%를 지원할수 있음으로 설치당시의 가액으로 토지비 152,685천원(100%)과 시설비 2,137,895천원 중 1,068,948천원(50%) 총 1,221,633천원을 회수하여 교하민의 정주권개발사업에 재투자 하고 미곡종합처리장은 정주권개발사업의 설치 목적대로 지역 농민의 복리증진에 계속 사용토록 하고자함.

□ 주 요 골 자

가. 양여재산

- 위 치 : 파주시 교하면 당하리 577, 578번지
- 토 지 : 2필지 / 4,942m'(1,498평)
- 건 물 :

[	도정공장 : 1동 / 1,048.68m'(317평)
]	창 고 : 2동 / 660m'(200평)
- 가계시설 : 불임내역

나. 사용용도 : 미곡종합처리장

다. 처분금액 : 1,221,633천원

라. 처분방법 : 수의계약(교하농협)

□ 참 고 사 항

- 농림수산업통합 실시요령 지침사본 1부
- 농림사업시행지침사본

1997년도

농림수산행정직시

1996. 11. 18

[농림(가축·농업)부속기관]

농림수산부

가축·농업

농림부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식량관리과입니다.

I. 미곡종합처리장 신규설치사업

1. 목 적

- 미곡종합처리장을 산지 쌀유통의 중심체로 육성하여 쌀유통구조 개선
- 벼의 수집·건조·저장·가공 및 판매과정을 자동화시설로 일관처리함으로써 농가편익 제공 및 비용절감
- 고품질의 지역특산물 생산 공급으로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

2. 추진방향

- 2000년까지 400개소를 일정수준의 원료비 확보가 가능한 들판을 중심으로 설치
 - 개소당 논면적 1,000ha 이상을 담당하도록 설치
 - 1개소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지역에 우선설치
- 쌀작목반·농업회사법인 등과 생산·가공·판매 연계체제 구축으로 명실공히 산지 쌀유통의 중심체 역할을 하도록 육성

3. 근거법령 : 양곡관리법 제22조(미곡유통업의 육성)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계	'91~'95	'96	'97(예산안)	'98	'99~2004
사업량(개소)		400	187	33	33	47	100
사업비 (백만원)	계	696,633	333,633	43,500	43,500	76,000	200,000
	보 조	248,700	77,700	18,000	18,000	35,000	100,000
	융 자	174,866	57,716	14,550	16,800	25,800	60,000
	지방비 자부담	-	-	-	-	-	-
		273,067	198,217	10,950	8,700	15,200	40,000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추진배경

-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및 부녀화 추세 가속화로 노동력 부족현상 심화
- 비효율적인 벼 수확·탈곡·건조·저장 관리로 손실과다발생
- 국민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고품질쌀 수요증대
- 벼 수확후 작업과정의 일관처리와 관태등 유통·금융기능 및 출하조절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필요

(2) 사업기간 : 1. 1 ~ 12. 31(가급적 벼수확기이전 완료)

(3) 지원대상자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및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의2 제7호·제8호의 생산자단체로서 미곡생산·유통을 하는 법인
- 일반사업자 : 양곡도정공장과 100평이상의 평창고를 보유한 자

(4) 지원단가 및 조건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개소당 지원단가 및 지원비율

(단위 : 백만원)

사업자별	지원단가	보 조	읍 자	자 부 담
생산자단체	2,000(100%)	1,000(50%)	600(30%)	400(20%)
일반사업자	500(100%)	-	400(80%)	100(20%)

※ 지원한도액(보조 및 읍자) 이상 초과액은 사업자가 부담(과잉투자 지양)

(5) 지원시설의 종류 : 미곡종합처리장 건축, 건조·저장·가공기계설비 및 부대장비

○ 설치규모 : 설치지역의 경지면적, 교통여건, 농가의 호응도, 수집 가능 원료곡 생산량, 기존도정시설과의 거리, 자금조달 능력 및 경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설치

- 생산자단체는 기본시설 II형, 일반사업자는 기본시설 I형으로 설치유도
- 기존 도정시설을 활용하여 건조·저장시설만을 설치하는 생산자단체는 기본시설 III형을 설치
- 기본시설 규모를 하한선으로 하며, 기본시설 규모이상 설치가능

기본시설유형	사 업 자	처리능력		
		건 조	저 장	가 공
I 형	일반사업자	1,000톤	600톤	20톤/일
II 형	생산자단체, 일반사업자	1,800	1,200	20
III 형	생산자단체	2,000	2,000	20

※ 가공능력 : 1일 8시간 가동기준임(단위 : 정곡, 톤)

○ 기계설비기준

- 입고 및 출고 : 기계적으로 일관처리가 가능하고, 입고되는 산물벼의 중량 및 수분이 자동으로 측정되는 구조
- 품질검사시스템 : 수분측정, 계량 및 제현작업 등을 자동화된 기계(벼품질자동판정기등)로 처리하여 벼의 품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설치된 구조
- 건조 : 반입시설과 연계, 통풍 또는 열풍건조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수분함량별로 구분 건조가 가능한 구조
- 저장 : 산물형태로 장기간 안전저장이 가능하고, 품종별·품위별로 구분저장이 가능하며, 저장중 식미유지가 가능한 구조("기본시설규모"내에서 옥외 사일로를 설치할 경우 단열, 송풍, 곡온측정·교반이 가능한 시설이어야 함.)
- 제어시설 : 입고·건조·저장·출고·가공·품질검사 등을 연계 또는 단독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구조

※ 국내생산 기자재를 적극 활용토록 하되, 가급적 KS규격 사용

나. '97 사업비(예산안) 내용

사업자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읍 자		
계	개소 33	백만원 43,500	34,800	18,000	16,800	-	8,700
생산자단체	18	36,000	28,800	18,000	10,800	-	7,200
일반사업자	15	7,500	6,000	-	6,000	-	1,500

※ 융자조건

- 생산자단체 : 연리 5%, 3년거치후 7년상환
- 일반사업자 : 연리 8%, 3년거치후 7년상환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식량정책심의관실 식량관리과(02-503-7274)
- 시·도
 -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 농정과
 - 경기도, 강원도 : 농업정책과
 -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 농산과
 - 전라북도, 전라남도 : 농산물유통과
- 시군자치구 : 산업과(또는 농정과)

다. 자금지원예정자 : 생산자단체 및 일반사업자

라. 사업시행

(1)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사업계획수립 :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 작성양식"에 의거 작성
- 사업계획변경 : 사업자가 건조·저장·가공능력의 변동이나 사업 대상지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2) 시설업체 선정

- 시설업체의 자격 :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자<단, 부득이한 경우 일반면허(종합면허)가 있는자 참여 허용>로서 자산, 기술자확보 등을 감안하여 하자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자에 한하여 설비에 참여 허용
 -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환경등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를 가진자
- 선정방법 : 생산자단체는 단체장(농협중앙회장등)책임하에 자율경쟁 입찰 또는 지경경쟁입찰유도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의 설치비용 절감
 - 기설치한 FPC의 A/S부실, 현저한 공사하자발생, 시공업체의 원인에 의한 사업이월 발생시 공사참여제한
- 감리 : 생산자단체는 시설업체 선정과 함께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철저한 감리에 의한 부실공사 방지(시설을 하는 업체가 감리를 할 수 없음.)
- 안전관리 : 농협중앙회장과 대한곡물협회장·한국양곡가공협회장은 회원사업자에 대한 시설안전설계 설치 및 시설후 안전점검(월2회)에 차질없도록 책임조치

(3) 사업비 지원방법

-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농림부 훈령 제862호, '96.6.13)이 정하는 바에 따름.

마. 시·군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운영 협의회 구성운영

< 구 성 >

- 위원장 : 시장·군수
- 위 원 : 산업과장,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또는 기술담당관),
농검출장소장, 농협 시·군지부 담당과장, 사업시행자,
관련 민간단체 임직원, 전문지식을 가진 학계 및 전문가

< 기 능 >

- 사업대상지역 및 대상자 선정 사전검토
- 시설·도로의 적정성 및 기자재설치의 적정성 검토
- 농지전용등 행정지원 협의 및 미곡종합처리장 경영분석 평가지도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생산자단체(농협중앙회, 시·도지역본부, 시·군지부) 및 관련 민간단체는 기술지원단을 설치하여 기술지원 및 운영지도
 - 건축 및 기계설비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
 - 설치도면 개발·선정 및 설치규모의 적정성 검토등 전문적 기술지원
 - 건조·저장·가공 및 기타시설의 고장, 기계작동 불량시 신속한 수리·보수실시로 가동의 원활화 도모
 - 전기·기계설비 등에 대한 전문기술자 확보 및 전국 1일보수체제 확립으로 주·야간 신속한 수리·보수체제 구축
 - 설치공장별 경영분석 및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미곡종합처리장 시설관리 및 원료비 매입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담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카드"를 비치기록 작성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사업자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조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미곡종합처리장 (벼 건조·저장·가공시설)	시설설치완료 일년부터	10년간	○ 융자금 회수완료시까지 사후관리 - 보조금을 지원받은 생산자단체는 융자금 상환이 완료되는 10년간 타인 또는 타 생산자단체에 시설양수도 불가함.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시에는 사업선정권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가능	

나. 보 고

보고사항	보고기관	피보고기관	보고기일	보고서식
o 사업추진실적 보고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매월 15일 이내 (3월부터)	별지 제4호서식
o 사업정산실적 보고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사업종료후 30일 이내	별지 제5호서식

6. '98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관할 시·군

나. 신청자격

o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7호(영농조합법인)·제8호(농업회사법인)의 생산자단체로서 다음조건을 구비한 법인
 - 미곡 생산·유통을 주사업으로 하면서 가공·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
 - 법인설립후 1년이상(신청일기준) 경과하여 연간 쌀 1,000톤이상 판매 실적이 있을것
 - 법인구성원이 5인이상으로 총출자액이 1억원이상이며, 법인구성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은 법인
 - 8억원이상 운영자금확보가 가능한자(관할농협 군지부장의 담보능력 또는 현금보유여부 확인서 첨부)

o 일반사업자 : 관내 기존도정공장과 건조·저장시설을 갖추 수 있는 평창고 100평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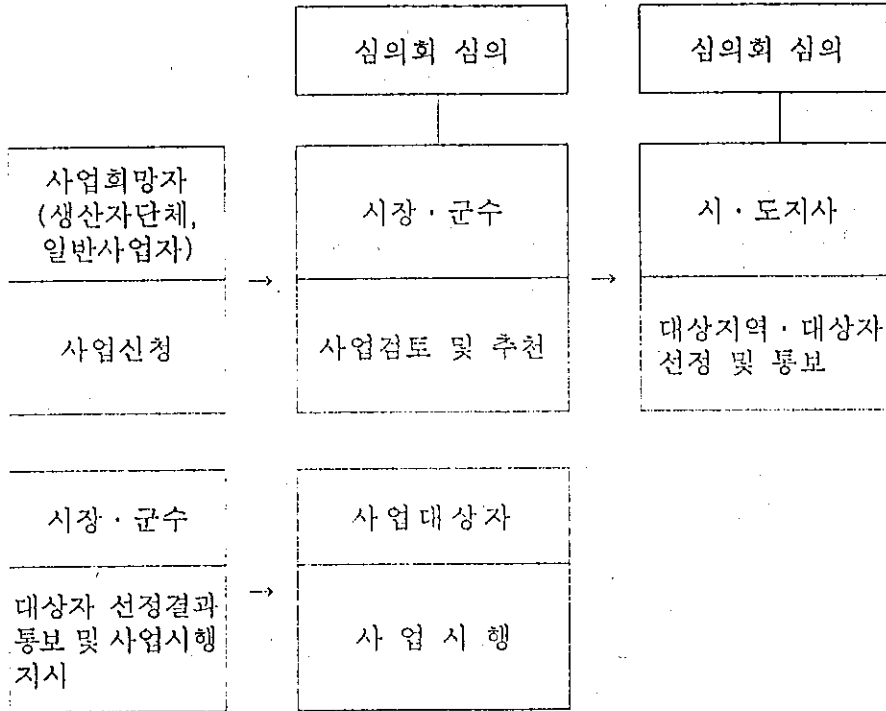
- 8억원이상 운영자금확보가 가능한자(관할농협 군지부장의 담보능력 또는 현금보유여부 확인서 첨부)

o 기타 앞 "6번 다항 (1) 선정기준"의 사업자 자격요건을 갖춘자 또는 단체

다.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시설설치기준에 의한 시설여건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농림사업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사업시행체계



라. 구비서류

- 농림사업 지원신청서 1부(실시규정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농림사업 정책자금 융자신청조서(실시규정 제2호 서식)
- 사업예정지의 토지 등기부등본 및 지적도

마. 사업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지역적 요건 >

- 벼 수확작업의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생산기반이 조성된 미곡생산량이 많은 넓은 들판지역으로서 원료벼 확보가능면적이 1,000ha 이상인 지역
- 가급적 기존도정시설과 마찰이 없는 지역으로서 주위에 개량곳간등 건조시설, 보관창고가 확보된 지역
- 쌀작목반·농업회사법인등 각종 영농조직과 연계하여 원료벼 확보가 용이한 지역특산물 생산지역
- 기존 미곡종합처리장과 원료벼 확보지역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지역
 - 동일 읍·면에 1개소를 초과하여 설치불기(동일 읍·면에 건조·저장 또는 가공시설중 어느 한부분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동일함)

< 사업자 자격요건 >

- 공장설치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자 또는 단체
- 관내 기존도정공장과 건조·저장시설을 갖추 수 있는 평창고 100평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자(일반사업자만 해당)
-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각종 영농조직과 연계하여 원료벼(물벼, 건조벼)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한 자 또는 단체
- 시설비 자부담 및 담보능력, 원료벼 확보 및 공장운영(8억원이상)에 필요한 자금력을 갖춘 자 또는 단체(관할농협 군지부장의 확인서 첨부)
- 정부양곡 입도정업자(대상자 확정과 동시, 공사완료일 기준 정부양곡 가공 도급계약 포기서 제출)
 - ※ 정부양곡 입도정계약은 공사완료일부터 자동해지된 것으로 한다.
- 쌀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또는 단체

(2) 우선순위

< 생산자단체 >

- ① 고도기술의 벼농사종합시범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거나 인접한 생산자단체
- ② 관내농가, 도정공장 또는 각종 영농조직등 민간인과 공동출자한 생산자단체
- ③ 양곡판매사업이 활발하고 취급양곡이 지역특산미로 인정받고 있거나 정착되어 있고 관내 기존도정시설의 인수 또는 연계출자방식을 취하는 생산자단체
- ④ 2개이상의 조합 또는 회사가 합병 또는 공동출자한 생산자단체
- ⑤ 신규 고정투자와 운영자금조달 여력이 있는 생산자단체
- ⑥ 지도자의 사업추진 열의도가 높고, 양정시책에 호응하여 시·도지사에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산자단체

< 일반사업자 >

- ① 설치예정지역이 고도기술의 벼농사종합시범단지내 또는 인접지역에 위치한 자
- ② 정부의 조곡매출사업 또는 조곡구매사업에 다년간 참여하여 미질향상과 민간의 쌀 유통기능 활성화에 공헌이 가능한 도정업자
- ③ 정부관리양곡 도정공장 공동출자 또는 시설이 현대화된 정부양곡도정업자
- ④ 5개이상의 일반도정공장이 합병 또는 공동출자하는 도정업체
 - 합병 또는 공동출자하는 일반도정공장은 미곡종합처리장 사업대상자로 선정됨과 동시에 기존 도정업 등록취소
- ⑤ 관내농가 또는 각종 영농조직등과 공동출자하는 도정업자

(3) 선정절차

- 시장·군수 : 관내의 도정공장 분포상황 및 원료비 확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기준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격대상자를 선정하고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추천 (생산자단체와 일반사업자 구분)
 - ※ 시장·군수는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예정지역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도시계획법·건축법·환경보전법등 각종 관련법령의 저촉여부 확인
- 시·도지사 :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업자에 대하여 지역별 배분계획과 선정기준에 의하여 시·도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 시·군별 미곡종합처리장 장기설치계획상의 적정성여부 검토

바. 기타사항

- 기타사항은 앞 "1~7번항"에서 정한 제반규정에 따름

II. 기존시설 증설(건조·저장)사업

1. 목 적

- 농가 산물벼 확보량이 많아 벼 수확기 적기 건조·저장처리에 애로를 겪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저장시설 증설지원
- 농촌노동력 및 수확후 관리비용 절감

2. 추진방향

- 농가 산물벼 확보량이 많아 건조·저장시설 확충이 시급한 곳을 우선지원
 - 기존시설에 추가증설 또는 인근지역에 위성시설로 탄력성있게 설치
- 미곡종합처리장당 건조·저장시설능력을 단계적으로 각 2,000톤까지 확충 추진
 - 산지 쌀유통의 중심체 역할을 하도록 지원

3. 근거법령 : 양곡관리법 제22조(미곡유통업의 육성)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계	'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개소)		389	22	25	64	60	218
사업비 (백만원)	계	200,250	7,700	8,750	22,400	21,000	140,400
	보 조	65,900	3,850	3,150	8,750	8,750	41,400
	음 자	93,565	2,310	3,115	9,170	8,050	70,920
	지방비 자부담	-	-	-	-	-	-
		40,785	1,540	2,485	4,480	4,200	28,080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추진배경

- 벼수확기 일시출하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적기 건조·저장처리에 애로
- 수확기 농가산물벼 처리능력 제고를 통한 농촌노동력 및 수확후 관리비용 절감

(2) 사업기간 : 1. 1 ~ 9. 30(벼 수확기 이전 완료)

(3) 지원대상자 : '91~'95년도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운영자로서 건조·저장시설 규모가 각 2,000톤 미만인 사업자(생산자단체, 일반사업자)

(4) 지원단가 및 조건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개소당 지원단가 및 지원비율

(단위 : 백만원)

사업자별	전 체	보 조	읍 자	자 부 담
생산자단체	350(100%)	175(50%)	105(30%)	70(20%)
일반사업자	350(100%)	-	280(80%)	70(20%)

※ 지원한도액이상 초과액은 사업자가 부담

(5) 지원시설의 종류 : 벼 건조·저장 기계설비

- 중설규모 : 건조 800톤이상, 저장 600톤이상
- 기계설비기준(가급적 건조·저장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 건조 : 반입시설과 연계, 통풍건조 또는 열풍건조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품종별·수분함량별로 구분건조가 가능한 구조
 - 저장 : 산물형태로 장기간 안전저장이 가능하고 품종별·품위별로 구분저장이 가능하며, 저장중 식미유지가 가능한 구조로서 단열, 송풍, 곡온측정이 가능한 시설

※ 국내생산 기자재를 적극 활용토록하고, 가급적 KS규격품을 사용

나. '97 사업비(예산안) 내용

사업자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계	예산안(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개소 64	백만원 22,400	17,920	8,750	9,170	-	4,480
생산자단체	50	17,500	14,000	8,750	5,250	-	3,500
일반사업자	14	4,900	3,920	-	3,920	-	980

※ 융자조건

- 생산자단체 : 연리 5%, 3년거치후 7년상환
- 일반사업자 : 연리 8%, 3년거치후 7년상환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미국종합처리장 신규설치사업”과 같음

다. 사업대상자 선정

(1) 우선순위

- ① 농가산물벼의 건조·저장시설 활용율이 100% 이상인 자
- 활용율이 동일한 경우 시설규모가 작은곳 우선
- ② 전년도 원료벼 확보량(농가벼+공매벼)중 농가벼 확보비율이 높은자
- ③ 전년도 경영손익이 흑자인 자

(2) 선정절차 : “미국종합처리장 신규설치사업”의 선정절차와 같음

라. 사업시행 : “미국종합처리장 신규설치사업”의 사업시행요령과 같음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미곡종합처리장 신규설치사업”의 사후관리요령과 같음

나. 보 고

보고사항	보고기관	피보고기관	보고기일	보고서식
○ 사업추진실적 보고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매월 15일 이내 (3월부터)	별지 제4호서식 (중산부반간기제)
○ 사업정산실적 보고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사업종료후 30일 이내	별지 제5호서식

6. '98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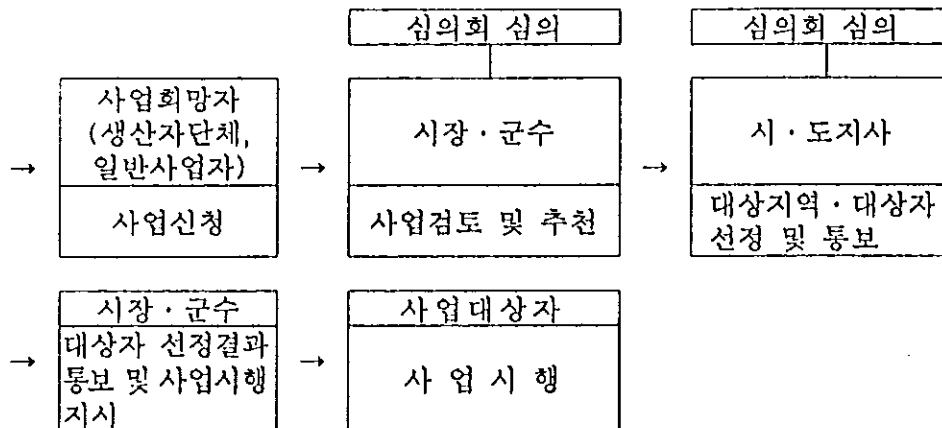
가. 신청서 제출기관 : 관할 시·군

나. 신청자격

- '91~'96년도에 설치한 미곡종합처리장중 건조·저장시설규모가 각 2,000톤 미만인 사업자(생산자단체, 일반사업자)

다.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시설설치기준에 의한 시설여건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농림사업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사업시행체계



라. 구비서류

- 농림사업 지원신청서 1부(실시규정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농림사업 정책자금 융자신청조서(실시규정 제2호 서식)
- 사업예정지의 토지 등기부등본 및 지적도

마. 기타사항

- 기타사항은 앞 “1~7번항”에서 정한 제반규정에 따름.

Ⅲ. 운영자금 지원

1. 목 적

- 수확기 농가산물벼 매입지원으로 산지쌀값지지 및 미곡종합처리장 운영
환성화 도모
- 농가산물벼 최대 수집·처리를 통한 농촌노동력 및 수확후 관리비용 절감

2. 추진방향

- 원료벼의 농가매입 실적 등에 따른 자금지원 차등화
- 매입자금의 3개재원 통합운용으로 저리지원

3. 근거법령 : 양곡관리법 제22조(미곡유통업의 육성)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계	'92~'95	'96	'97(예산안)	'98	'99~2004
지원개소수(개소)		1,318	292	155	218	253	400
사업비 (백만원)	계(읍자)	1,394,200	188,900	134,300	218,000	253,000	600,000
	- 농특회계	695,600	21,000	56,000	106,800	151,800	360,000
	- 농업경양자금	232,900	152,900	40,000	40,000	-	-
	- 농협자금	465,700	15,000	38,300	71,200	101,200	240,000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자

○ '92~'96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자

※ 단, '96년 사업자중 '96.12.31까지 설치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자와 양곡부정유통 적발업체(양곡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영업
정지처분 이상)는 읍자대상에서 제외

- '97 운영자금 운용상황에 따라 '91 사업자 또는 '97 사업자중 '97.9.30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는 사업자에게 지원가능

(2) 재원구성 및 지원액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업경영자금 + 농협자금
- 개소당 지원액 : 10억원 수준(8~15억원 범위)

나. '97 사업비(예산안) 내용

재원	금액(억원)			금 리
	'96 기확보	'97 예산액	계	
농 특 회 계	560	508	1,068	% 0
농업경영자금	-	400	400	5
농협자금(상호금융)	-	712	712	12.5
계(통합운용금리)	560	1,620	2,180	5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집행계획수립 및 자금배정) : 농림부장관

나. 사업담당부서

- 농 립 부 : 식량정책심의관실 식량관리과(02-503-7274)
- 농협중앙회 : 양곡부 미곡종합처리장 사업단(02-397-6412)
- 농협 시도지역본부 : 여신지원과
- 농협 시군지부 : 여신과 대부계

다. 융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시군지부)

- 농특회계 차주 : 농협중앙회장
- 예산 및 자금배정요구 : 농협중앙회(시군지부)
- 융자실행 : 농협중앙회(시군지부) → 사업자

라. 융자조건 및 운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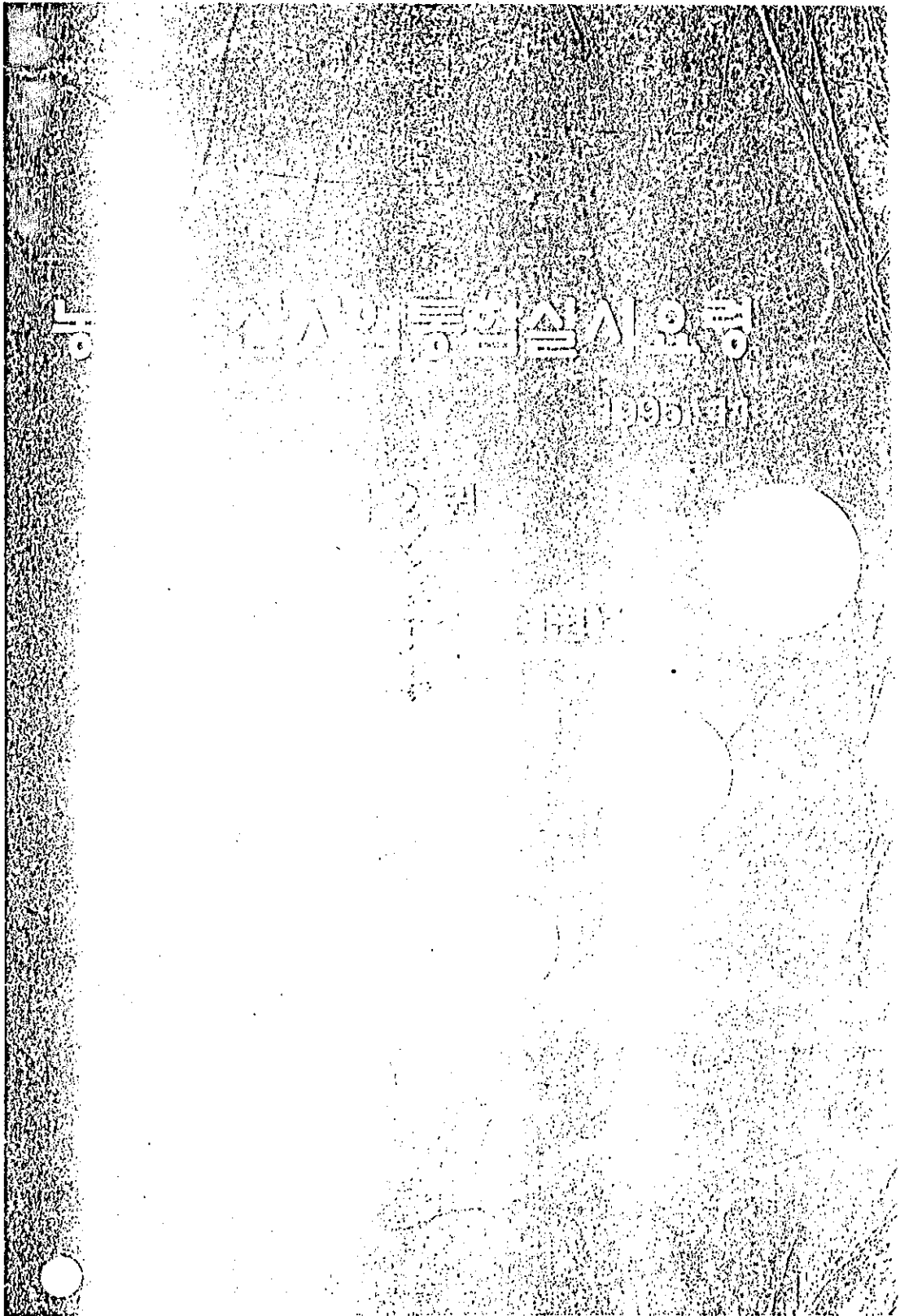
- 지원대상 : 미곡종합처리장 설치후 5년간만 지원('91년도 설치자 제외)
- 연리 5%(기간 1년 : 매년도 상환기일에 상환)
- 농특회계, 농업경영자금, 농협자금(상호금융)을 통합운용하여 통합금리 5% 수준으로 지원
- 개소당 융자금 : 8억원은 상환기일 도래일에 균등지원하고, 남은 잔액은 '97.11월말기준 원료비 매입실적, 계약재배실적, 기타 정부시책 협조 등에 따라 차등지원
- ※ 사업자별 융자금액과 한도액은 대년도마다 결정시달('97 융자한도액 : 15억원)
- 원료비 매입자금과 기타자금의 구분계리

마. 융자신청 구비서류

- 균등지원분 : 농가산물비 매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차등지원분 : 농검출장소장 발행 원료비 매입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바. 채권보전 및 기타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자계정운용지침 및 융자취급기관의 여신 관리규정에 의함
- 농특회계자금의 취급수수료는 없음.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일반정주권개발사업(공공)

1. 목 적

-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개발을 촉진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농어촌의 면단위 중심생활권 지역에 집중투자를 유도하여 주택정비, 편익시설, 도로, 상·하수도 및 환경시설등 배치

나. 장기사업목표

2004년까지 전국 1,241개 면중 오지(401)면, 도서(53), 무인(10)면 등을 제외한 777개 정주권개발대상면 1차지원 완료

3. 투융자계획

가. 사업목표 및 중장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2004	합 계
사업량 (면수)	(보 사 조 입)	76	39	57	58	60	487	777
사업비	계	648,240	178,087	229,494	225,560	234,000	1,518,539	3,033,920
	국 고 (지 방 양여금)	328,250	87,211	113,816	121,590	126,000	831,433	1,608,300
	지방비	155,877	37,376	48,778	52,110	54,000	341,159	689,300
	융 자	164,113	53,500	66,900	51,860	54,000	345,947	736,320
	자 담	-	-	-	-	-	-	-

※ 사업량은 완료기준임.

나. '96지원계획(추정)

구 분	사업량(면수)			사업비 (백만원)	비 고
	신규	계속	완료		
계	-	-	-	229,490	
○ 보조사업	40	171	57	162,590	○ '96사업시행면 : 211개면
- 국 (지방양여금)	-	-	-	113,790	
- 지 방 비	-	-	-	48,800	
○ 융자사업	93	130	63	66,900	○ '96사업시행면 : 223개면
- 농특회계	-	-	-	66,900	

4. 정주생활권 면개발계획 수립

가. 목 적

- 농어촌 정주권개발 대상면의 지역특성에 따라 생활환경, 산업기반, 편익, 복지시설등 장기발전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
- 농어촌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로서의 역할
- 기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계획

나. 연차별 계획수립

- 2001년까지 777개의 면개발계획 수립완료
 - 매년 시·군별 사업추진 진도를 참고하여 연간 계획수립 면수 결정

구분	'94까지	'95	'96	'97	'98	'99-2001	계
면수	393	80	55	55	55	139	777

- '96개발계획 수립대상면수 : 별도시달

다. 면개발계획의 수립

1) 계획수립주체 : 시장·군수

- 농어촌진흥공사 등에 위탁하여 수립함을 원칙으로 함.
- 면당 계획수립비 : 39백만원(시·군의 지방양여금등 보조사업비에 계상)

2) 대상면 선정

- 농림수산부장관의 면개발계획 수립 방침에 따라 시장·군수가 대상면 선정

3) 계획수립절차

- 면개발계획 수립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지역별 중·장기 개발방향과 지역주민의 개발수요 등을 조사하여 개발계획서(안) 작성
- 시장·군수는 개발계획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 수립
- 시장·군수는 개발계획서(안)을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승인요청
- 시장·군수는 시·도지사로 부터 개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지역주민에게 알람
-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가 제출한 개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개발계획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4) 개발계획 수립 소요기간 : 1년으로 함.

- 시장·군수는 1년내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조기 계약체결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5) 개발계획의 내용

- 정주생활권개발의 중·장기 목표와 개발방향
- 지역현황
- 농어촌 정주체계 정비계획
- 각 부문별 개발계획 : 생활환경, 산업기반, 편익·복지시설 등
- 중·장기 투융자 계획 등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자원조사 대상항목중 농어촌생활환경 정비분야

6) 개발계획의 변경

- 개발계획의 변경은 개발계획수립절차와 동일
- 다만, 아태의 경미한 사항변경과 인접지역과 연계된 사업계획은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조정
 - 타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변경,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
 - 사업시행기간의 변경과 지형사정으로 인한 시설의 근소한 위치 변경

라. 개발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투융자계획은 사업내용, 성격, 규모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작성하되 42조원 농발계획등 정부의 중장기계획을 참고하여 타당성 있게 수립
 - 정주권개발 대상사업 : 지원가능한 사업비 투융자규모(50억원 수준)를 기준으로 사업대상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1,2단계로 구분
 - 타부분사업 : 단위사업별로 투융자계획 수립
- 소득원 개발등 (예 : 저온저장고, 비닐하우스, 유통가공시설 등) 지원사업은 농림수산부 또는 타부처의 단위사업과 동일한 지원기준 적용
- 정주권개발대상면이 행정구역 개편등으로 조정이 예상되는 지역은 계획수립 대상 후순위로 조정
- 개발계획서에는 반드시 개발계획수립 참여자 명기
- 개발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도시계획 등 타부문 계획과 조화되도록 수립하여야 함.

마. 개발계획 수립의 효과

- 농어촌정비법 제3조에 의한 자원조사 기초자료 활용
- 농어촌지역의 중장기발전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면단위지역개발의 지침서로서의 역할과 정주권개발 대상사업계획 수립의 기준이 됨.

5. 일반정주권개발사업 시행

가.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현황

1) 사업내용

- 마을기반정비 : 마을내도로, 상.하수도시설 등
- 농어촌지역 도로정비 : 마을간 도로, 연결도로, 교량 등
- 농어촌산업개발 : 공동영농어시설(집하장, 공동작업장, 가공.저장시설등), 농로 등
- 문화복지시설 : 복지회관, 마을회관 등
- 환경보전시설 : 쓰레기처리장, 오폐수처리시설등
- 재해방지시설 : 하천정비, 마을안전시설 등
- 주택정비 : 신축, 개량 등

2) 지원대상 : 면단위 정주권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면

3)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면당 39억원 수준(보조 30억원, 융자 9억원)
- 지원규모 초과사업은 별도 재원으로 자체적 추진
- 지원방법 : 면단위별로 지원완료 위주로 지원
- 보조사업 : 지방양여금을 시·군의 먼수비율에 의해 배분
- 융자사업 : 면당 9억원 범위내에서 주택신축자금등 지원

4) 사업시행체계

- **면개발계획 수립(시장·군수→시·도지사 승인)**
→ **사업시행계획 수립(시장·군수→시·도지사 승인)** → **사업시행(시장·군수)**

5) 융자사업 추진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및 주민(사업자)
- 사업비 지원방향
 - 농어촌주택정비, 농어촌용수시설, 주민편익시설등 지원
 - 발전가능성이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지원(보조사업면과 연계 지원)
- 융자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융자희망자를 해당 면장의 추천을 받아 시,군 농어촌발전 심의회의 심의등 공정한 방법으로 대상자 선정(대상자 선정시에는 기수 해여부,타부문융자 중복지급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함.)
 - 융자대상자 선정기관(시장,군수등)은 대상자 선정시 융자신청자의 신용 상태, 담보 제공능력 등 융자가능성에 대하여 융자취급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융자방법
 - 사업시행자가 농어촌 또는 민간업체인 경우 융자취급기관은 융자금을 사업시행자의 여신자금관리계좌에 입금후 사업실적확인(행정기관 또는 사업선정권자) 결과에 따라 융자금 지급
-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농,수,축,임협중앙회(회원조합 포함)등인 경우 사업주관부서에서 특별히 지정한 경우에는 여신관리자금 계좌에 입금없이 융자금 일시지급 가능
- 융자종결기한 : 매 회계년도말(12.31)
 - 다만, 농림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융자금 사후관리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시점검 및 지도,감독 실시
-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및 융자지원조건 《별표 1》

다. 사업시행

1) 사업대상면 선정

- 선정기준 : 면단위 정주권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면 중에서 면별 사업 시행순위에 따라 시장·군수가 사업시행 대상면을 선정

2) 대상지역 선정

- 면개발계획서에 의거 면당 1~3개의 중심마을을 선정하고 개발계획에 따라 대상사업 선정
- 면지역내의 중심마을은 교통·산업·교육·문화의 중심이 되고, 발전잠재력이 큰 마을을 선정
- '95년도 행정구역개편으로 면에서 읍으로 승격된 지역중 개편당시 정주권 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지역이거나 정주권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사업의 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계속 지원가능 (보조사업비는 당해 시·군에 배분되는 지방양여금 범위내에서 지원)

3) 대상사업 선정

- 생활기반조성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농어촌도로등 타부문에서 재원 조달이 가능한 사업은 가능한 타부문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유도
- 시장·군수는 개발계획에 의거 기 선정된 중심마을에 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매년 당해년도에 착수할 대상사업과 전년도부터 계속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선정.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매년 정주권 개발계획과의 관계, 집중 시행여부등 타당성을 검토 확정하여 시장·군수에게 시달

4) 사업시행계획 수립

- 시장·군수는 개발계획서에 의거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당해년도 투자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
- 농림수산 관련단체 등이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당해년도 완공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년도에 완공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는 설계·용지매수·공사준비 등을 실시하고 2차년도에 완공

5) 사업시행

- 사업시행은 설계도서에 맞게 실시하여야 하며, 수탁사업자가 시행시 현지 여건상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변경 시공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장·군수는 공사시행과정중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전·후의 현장사진 등을 보관하여야 함.

6) 사업의 위탁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수산 관련단체 등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 《별표 2》

7) 용지매수 및 보상

-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는 시장·군수(또는 수탁시행자)가 담당
- 각종 시설용지의 확보는 매수·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농어촌정비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환지·교환·분합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사업시행에 필요한 용지확보 및 보상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름

8)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

-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민간전문업체에게 위탁할 수 있음.
- 공사감리를 위탁시행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공사관리의 책임자를 지정 하여 공사시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함.

6. 행정사항

가. 사업관리

- 대상사업중 공동이용시설 및 수익시설은 사업비를 단위사업별로 동일지원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용자 또는 자부담시킬 수 있으며, 완공후 수익자에게 관리토록 할 수 있음.
- 시장·군수(또는 수탁시행자)는 용지매수보상, 공사발주 및 재산관리(등기·수속등)에 철저를 기하고 시설물의 관리자를 지정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예산반영, 시설물관리요령 작성등)를 하여야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정주권개발사업 추진과 관련된 필요한 일반 관리비를 계상, 집행할 수 있음.

나. 설계감리등 사업비 효율

-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9조 <별표5> 참조

다. 사업의 평가

- 1)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중 및 사업완료후 농림수산사업평가 실시요령에 의거 매년 2월말까지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2) 평가내용
 - 사업추진절차 준수여부, 사업의 집중투자등 평가
- 3) 평가항목
 - 보조사업 진행현황
 - 용자사업비 집행현황
 - 집중투자여부
 - 농어민 혜택 여부
 - 공사추진상황
 - 타사업과의 연계성
 - 민원발생 빈도

4) 평가자료의 활용

- 농림수산부는 년 1회이상 사업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예산자료 등으로 활용함.
- 우수지방자치단체에게는 사업량 및 사업비 확대지원등 혜택 부여

라. 보고등

1) 면개발계획 수립

- 면 개발계획수립 대상면 추천 : 당해년도 1.31까지 (별지 제1호 서식)

2) 정주권개발사업 시행

- 농어촌정주권개발 보조 및 융자사업 추진계획 보고 : 당해년도 1.31까지
(별지 제2호 서식)
- 농어촌정주권개발 보조 및 융자사업 추진실적 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
- 일반정주권개발대상사업 선정결과 보고 : 매년 3.10까지
(별지 제4~5호 서식)
- 일반정주권개발사업 추진현황 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6호 서식)

마.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앙 : 농어촌정비과
- 시·도 : 농정국 기반정비과
- 시·군 : 건설과

응자대상자 선정기준 및 응자지원 조건

1. 응자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사업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선정권자
○ 문화마을 조성사업	○ 정주개발대상지역에 문화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 (시장·군수, 농진공) ○ 문화마을조성사업을 실시하는 지구에 한함.	시·도지사
○ 임대주택	○ 문화마을조성사업지구내에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시장·군수, 농진공)	"
○ 주택신축	○ 정주개발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사업을 추진 및 입주하고자 하는 자(주민)	시장·군수
○ 주택개량	○ "	"
○ 농어촌 용수시설 (상하수도 포함)	○ 정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	시·도지사

2. 응자지원 조건

사업명	금리	응자기간			응자한도	응자비율
		계	거치	상환		
○ 문화마을 용지매수	3%	4	2	2	○ 사업지구당 100억원 이내	○ 소요사업비의 100% 이내
○ 임대주택	5	20	5	15	○ 지구당 5억원 이내	○ 전체사업비의 50% 이내
○ 주택신축 (문화마을)	5.5 (5)	20	5	15	○ 호당 2천만원 이내	○ 소요자금의 70% 이내
○ 주택개량	3	10	3	7	○ 호당 5백만원 이내	○ 소요자금의 100% 이내
○ 주민편익 시설	5	5	2	3	○ 사업비자당 3천만원 이내	○ 소요자금의 50% 이내
○ 농어촌 용수시설 (상하수도 포함)	3	20	5	15	○ 지구당 3억원 이내	○ 소요자금의 50% 이내

3. 자금의 용도 및 용자대상자

사 업 명	자 금 의 용 도	용자대상자
○ 문화마을조성사업	○ 문화마을조성사업지구의 용지매입등	시장·군수 (농진공)
○ 임대주택	○ 문화마을조성사업지구에 건립되는 임대주택의 건축비	"
○ 주택신축	○ 주택신축(단독 또는 공동주택)에 소요되는 자금	주 민
○ 주택개량	○ 부엌, 목욕탕, 화장실, 담장등 기존주택을 개량 하는데 필요한 자금	"
○ 주민편익시설	○ 영농어지원시설, 시장정비 및 조성등 주민 편익시설사업을 추진	사업자
○ 농어촌용수 (상·하수도 포함)	○ 농어촌지역의 용수(생활용수, 상·하수도등) 사업을 시행하는데 부족한 지방비에 지원	시장·군수

사업의 위탁

○ 목 적 : 정주권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농진공, 농협등
농림수산 관련단체를 참여토록 함.

○ 대상사업 예시

- 도로, 용수등 사회기간 시설 : 농진공, 농조연 등
- 유통·가공시설, 곡물건조보관시설, 농기계수리보관시설, 농산물집하장 등
- 공동영농어시설 : 농협, 수협, 축협 등
- 다목적 복지회관(도서관, 경로당, 체육시설, 탁아소, 목욕탕등) : 농협, 수협 등

○ 사업추진방법

구 분	시장·군수의 위탁사업	농림수산 관련단체의 자체사업
사업방법	시장·군수로 부터 위탁받아 시행	정주권개발계획에 따라 농림수산관련단체가 자체적으로 연관 시행
자금지원	전액보조	정주권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시장·군수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설비중 50% 보조 (시설부지는 자체확보)
관리운영	시장·군수가 시설물의 소유 관리자(관리운영 위탁가능)	관련단체가 시설물의 소유·관리 운영

□ 현 황

①위 치 : 파주시 교하면 당하리 577, 578번지

②시설현황

부지면적	건 물			비 고
	계	도정공장	창 고	
4,942M ² (1,498평)	3동/1,708.68M ² (517평)	1동/1,043.68M ² (317평)	2동/660M ² (200평)	건조기 30톤/일 가공기 30톤/일 기타기계시설

③재원현황

(금액:천원)

계 (100%)	양여금 (70%)	드 비 (15%)	시 비 (15%)	비 고
2,290,580	1,603,400	343,590	343,590	

④투자비

(금액:천원)

계	부지매입비	시 설 비	비 고
2,290,580	152,685	2,137,895	

⑤관리현황

- 수탁자:교하농업협동조합
- 수탁기관 : '95. 1. 1. ~ '97. 12. 31. (3년)
- 사용료 및 관리비 지원 현황

년도별	징 수 액	관리비지원액	차감수익액	비고
계	116,195,080	20,050,000	96,145,080	
'97	42,596,240	13,700,000	28,896,240	
'96	36,784,320	6,350,000	30,434,320	
'95	36,814,520	-	36,814,520	

□ 실태 및 문제점

- ① 3년간 교하단위농협에 사용허가 결과 교하농협에서는 116,195천원의 사용료와 71,408천원의 수리를 하였음에도, 시설의 교체증설에 1,153,700천원의 시비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본미곡처리장으로 인한 시비의 투자가 계속되어야 할 실정.
 - ② 지방재정법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본미곡종합처리장은 행정재산으로서 처분대상이 아니며, 용도폐지조차 명분이 없음으로 직접 운영 또는 유상 사용허가 만이 최선의 관리방법 이겠으나, 3년간 105,079천원의 결손운영을 경험한 교하농협에서는 계속사용허가 신청마저 기피하고 있어 동미곡종합처리장을 직영하지 않을 경우 정주권개발사업의 실효를 거양키 어려움.
 - ③ 농협의 계속사용 기피 사정으로는 양곡관리법 제22조(미곡유통업의 육성)농협등에서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정부의 농특회계 및 농업경영 자금을 저리(5%수준)로 운영 자금을 지원 받을수 있으며, 건조·저장시설 증설 시에도 농특회계에서 보조 175백만원(50%), 융자105백만원(30%) 지원 받을 수 있으나 교하미곡 처리장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가 되고 있어 국가의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중삼중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정부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0년이상의 장기허가를 하여야 가능 하나, 국공유재산관리 및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상 3년이상 장기허가는 불가능 함.

□ 대 책

① 미곡종합처리장(정미소)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인력과 제도적으로 불가능 함에도 본미곡종합처리장을 농협이나 생산자단체가 주체가 되어 설치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설치하여 행정재산으로 취득한 후 농협에 사용허가 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보수비나,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소유와 관리의 이원화로 적정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수익적 특정지역 특정시설에 막대한 시비의 계속투자 역시 시재정의 적정한 운영이라 할 수 없음으로 교하농업협동조합에 양여하여 불합리한 시설의 관리 운영을 개선하여야 할 것임.

② 교하농협이 동시설 수탁관리를 기피하면서 동지역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무상양여 대책위 등은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설치된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하여 무상양여를 요구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유상으로 양여 코자 함.

<제 1안> 농림부의 정주권개발사업 지침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생산자 단체 일때는 보조50% 용자 및 자부담50%(시설부지 자체확보)의 지침이므로 교하미곡종합처리장의 설치당시의 가액으로 토지비 전체와 시설비 50%만을 회수하여 교하면의 정주권개발사업에 재투자

	투 자 액	회 수 액	비 율	비 고
계	2,290,580	1,221,633		
토지구입비	152,685	152,685	100%	
시 설 비	2,137,895	1,068,948	50%	

<제 2안> 다른 농협의 경우(파주,북파주,탄현) 평균 국고지원 25.99%이고, 최근 파주농협의 경우 1,000,000천원의 국고지원을 받았으므로 총투자비 2,290,580천원중 1,000,000천원을 제한 1,290,580천원만 회수하고 양여하는 방안

<제 3안> 시유재산으로 취득한 절차에 하자가 없음으로 shit가감정으로 교하농협에 수익계약으로 처분하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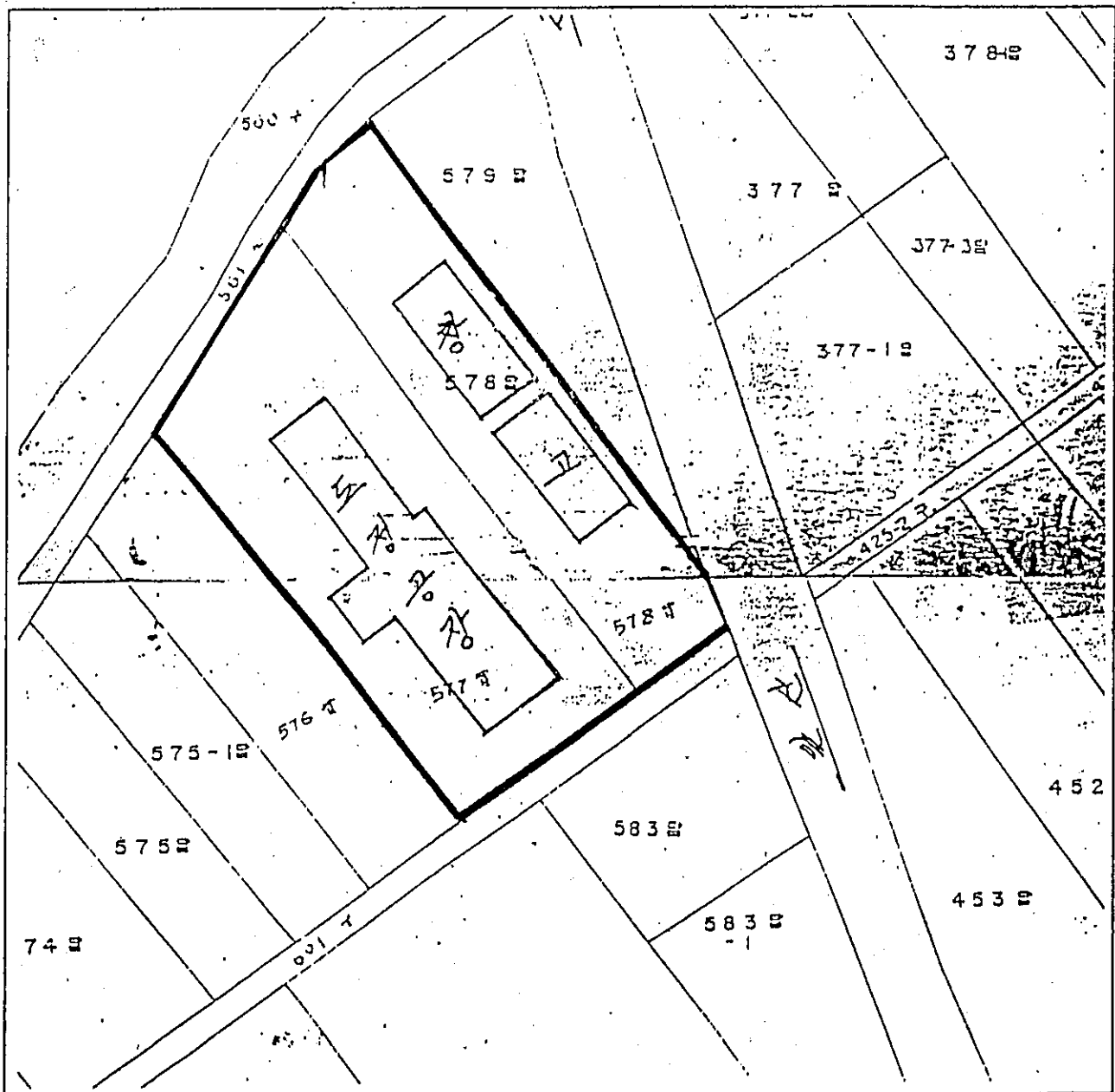
토지 및 건물 현황도

◦ 대상재산 : 파주시 교하면 당하리 (교하미곡종합처리장)

◦ 토지 — 2필지 / 4,942M² (1,498평)

◦ 건물 도정공장 1동 1,048.68M² (317평)
 창고 2동 660.00M² (200평)

◦ 위치 : 파주시 교하면 당하리 577, 578번지



(별지제 1 호서식)

(제 1 편)

대장번호				외주시				일반건축물대장				준공일자	94. 10. 27	번호	225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당하리		지번		578		명칭 및 번호											
지역지구		외지역 (준농림)		용도		창고													
대지면적		1,878.75m ²		연면적		660.0 m ²		층수		지하: - 층 / 지상: 1 층		구조		정량칠골조		지붕		판별	
건 축				현 황				소 유 자				현 황							
층별	면적	용	도	층별	면적	용	도	인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	분			
A동 1층	330.0	창	고					94.											
B동 1층	330.0	창	고																
합계		660.0																	
연번		층수	면적	구조	이 등(조)본은 건축물대장의 원본과 불합치함을 증명합니다.														
					199 년 월 일														
부속건축물					경기도 파주시 장														

고유번호	4151033028-10577-0000		
토지소재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당하리		
지번	577	축척	1:1000

토지 대장

도면번호	1	발급번호	970910-0234-01
장번호	1-1	처리시각	16 시 11 분 11 초
비고		작성자	김나

토지표시			소유권		
지목	면적 (㎡)	사유	변동일자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02) 밭	*2529㎡	(62)1984년 6월20일 구획정리 완료	1993년 2월 9일 (03) 소유권이전	파주군	3137
(02) 밭	*2989*	(50)1996년 3월 1일 파주군 어서 행정구역명칭변경		이 하 여 백	
		이 하 여 백			
등금수정년월일	1986. 8. 1 설정 101	1989. 1. 1 수정 102	1990. 1. 1 수정 110	1991. 1. 1 수정 117	1991. 10. 1 수정 122
토지등금(기준수익률등금)				1992. 1. 1 수정 126	1993. 1. 1 수정 130
					1994. 1. 1 수정 133

토지대장에의한 등원인

등본입니다.



1997년 9월 10일

파주시장

공용

* 수입증지가 첨부 소인되지 아니한 등본은 그 효력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은 체결하고 반대급부가 이행된 날이나,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유번호	4151033028-10578-0000		
토지소재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당하리		
지 번	578	축 적	1:1000

토 지 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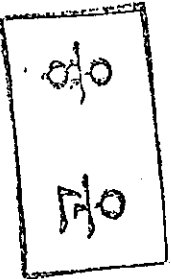
도면번호	1	발급번호	970910-0234-02
장 번 호	1-1	처리시각	16 시 11 분 14 초
비 고		작성 자	김나

토 지 표 시			소 유 권		
지목	면 적 (㎡)	사 유	소유자	성 명 또 는 명 칭	등 록 번 호
(02) 밭	*1953*	(62)1984년 6월20일 구획정리 완료	1993년11월18일		
			(03)소유권이정	파주군	3137
(02) 밭	*1953*	(50)1996년 3월 1일 파주군 여성 행정구역명칭변경		이 하 여 백	
				이 하 여 백	
등급수정년월일	1986. 8. 1	1989. 1. 1	1990. 1. 1	1991. 10. 1	1992. 1. 1 1993. 1. 1 1994. 1. 1
토지등금(기준수확등금)	101	102	110	수정 122	수정 126 130 133

토 지 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임

등 본 임니다.

1997 년 9 월 10 일



파 주 시

* 수입종지가 첨부 소인되지 아니한 등본은 그 효력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등권 이전 계약의 체결하고 반대급부가 이행된 날이나, 계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대표기 부과됨

기호	명 칭 (종 류) 구 조. 규 격. 형 식. 성 능	기 호	명 칭 (종 류) 구 조. 규 격. 형 식. 성 능
	미곡종합처리설비 Model : RPC1000-1W Cap : 15Ton/Hr이상 건조능력 : 1000Ton/year (Max : 1900Ton/year) 저장능력 : 600Ton (Max : 800Ton) 가공능력 : 백미생산 3Ton/Hr이상 색채선별 3.5Ton/Hr이상 1) 조작 및 건조부분		31 건조배출 승강기-9ton/H- (1) 32 가공이송 승강기-9ton/H- (1) 33 벼탱크 승강기-15ton/H- (1) 34 원료투입 배출콘베어-15ton/H- (1) 35 건조기 체인콘베어-15ton/H- (1) 36 건조기 배출콘베어-15ton/H- (1) 37 가공이송 벨트콘베어-15ton/H- (1) 38 원료조선기-15ton/H- (1) 39 재탈곡기-2ton/H- (1) 40 자동수분측정기-단립측정호퍼- (2) 41 자동샘플채취기-HSF-300- (1) 42 원료계량기-15ton/H- (1) 43 순환식 곡물건조기-6ton/H- (5) 44 자동수분 콘크로라-직류저항- (5) 45 단량센서-압력. 감지식- (5) 46 건조계량기-6ton/H- (1)
1	원료투입 호퍼2000x2000- (2)		2) 저장 및 건조부분
2	원료투입 승강기 호퍼-0.15m ³ - (1)	1	송풍장치-60HP- (2)
3	원료계량 승강기 호퍼-0.15m ³ - (1)	2	환풍장치-5HP- (2)
4	원료계량기 탱크-5m ³ - (1)	3	송풍문-300x1000- (12)
5	분배샷터-자동- (6)	4	곡물출고 조절장치-150x200- (12)
6	분배샷터-수동- (3)	5	곡물입고 조절장치-170x450- (12)
7	자동투입샷터-15ton/H- (5)	6	곡물분산장치-350m/m- (12)
8	건조기 배급 및 배진장치-300mm- (5)	7	닥트시스템-3750x3750- (12)
9	순환식 곡물건조기 투입샷터- (5)	8	입고체인콘베어-23M- (2)
10	자동배출샷터-15ton/H- (5)	9	순환체인콘베어-7.7M- (1)
11	배출벨트콘베어 안내관- (1)	10	출고용벨트콘베어-26M- (1)
12	배출보조탱크-24m ³ - (1)	11	원격데이터감지장치- (1)
13	건조계량탱크-8.5m ³ - (1)	12	자동온도측정시스템-HM-300- (1)
14	승강기 호퍼-0.2m ³ - (8)	13	자동레벨측정시스템- (1)
15	조작부배진관 및 좌대- (1)	14	저장실 배선 및 배관- (1)
16	조작부 이송관 및 좌대- (1)		3) 제어 및 검사부분
17	중앙배진장치-중앙집중형- (1)	1	중앙제어반-HSCB-1C- (1)
18	건조구조물- (1)	2	조작실 현장제어반- (1)
19	연료배관- (1)	3	송풍기 전용제어반-HSFC- (1)
20	조작실 압축공기 공급장치-10HP- (1)	4	검사실 좌대 및 후레임- (1)
21	환풍기 장치2.2KW- (1)	5	검사실 배기 및 집진닥트- (1)
22	조작실배선 및 배관- (1)	6	전산운영시스템- (1)
23	원료투입 승강기15ton/H- (1)	7	검사관리전산시스템- (1)
24	조선리턴 승강기-3ton/H- (1)	8	품질판정기
25	원료계량 승강기-15ton/H- (1)	9	단립수분계 샤슈-CTR-800AH- (1)
26	저장투입 승강기-15ton/H- (1)	10	동환미 검사기-광학식수동- (1)
27	순환 승강기1-15ton/H- (1)		
28	순환 승강기2-15ton/H- (1)		
30	분배 승강기-15ton/H- (1)		

기 호	명 칭 (종 류) 구 조, 규 격, 형 식, 성 능	기 호	명 칭 (종 류) 구 조, 규 격, 형 식, 성 능
11	휴대용 수분측정기-KS직류저항식-(2)	38	색채선별리턴송강기-3ton/H-(1)
12	테스터 현미기-FC4-(1)	39	청결미송강기-6ton/H-(1)
13	립선별기-SINGLE-(1)	40	포장송강기크-9ton/H-(1)
14	테스트드라이어-50TRAY-(1)	41	현미배출벨트콘베어-450x6000-(1)
15	고주파수분계-MGMT-(1)	42	백미배출벨트콘베어-450x6000-(1)
16	전자바란스	43	이동식벨트콘베어-7M-(2)
	4) 가공부문	44	제망기 및 좌대-4-6ton/H-(1)
1	원료투입호퍼-150x150-(1)	45	정선기 및 좌대-4ton/H-(1)
2	현미탱크-16m³-(3)	46	현미기-3-4ton/H-(1)
3	백미탱크-16M310000-(2)	47	왕겨풍구 및 좌대
4	백미탱크에어담파-200x200-(2)	48	왕겨이송스크류콘베어-200x5000-(1)
5	스크류콘베어에어담파-200x200-(2)	49	현미분리기 및 좌대-3-4ton/H-(1)
6	현미탱크에어담파-200x200-(3)	50	청치선별기 및 좌대-(1)
7	백미투입구-600x600-(1)	51	현미석발기 및 좌대-4ton/H-(1)
8	색채선별기 좌대 및 AVR-(1)	52	현미투입스크류콘베어-200x6000-(1)
9	색채선별기 샤프-(1)	53	연삭식정미기 및 좌대-3ton/H-(1)
10	가공실 제어반-(1)	54	입형정미기-3ton/H-(1)
11	분배기-2WAY250A-(5)	55	백미석발기 및 좌대-3ton/H-(1)
12	분배기-2WAY200A-(2)	56	백미유량계-5ton/H-(1)
13	기체보조탱크-1m³-(6)	57	로타리시후다 및 좌대-3ton/H-(1)
14	기체보조탱크-2.4m³-(1)	58	미강설발기-300Kg/H-(1)
15	기체보조탱크-3m³-(6)	59	색채선발기-4SCHA안자이-(1)
16	제현부각종규트 및 호퍼-(1)	60	청결미기 및 좌대-DRP-200-(1)
17	정미부각종슈트 및 호퍼-(1)	61	수동계량기-40Kg/회-(1)
18	포장부각종슈트 및 호퍼-(1)	62	수동소포장기-10Kg/300회/H-(1)
19	가공실 에어공급장치-15HP-(1)	63	자동지대미포장기-20Kg/600회/H-(1)
20	가공실 에어공급장치-10HP-(1)	64	제현부싸크론 및 헨-5HP-(1)
21	안전난간 및 지지대-(1)	65	정미부싸크론 및 헨-5HP-(1)
22	가공실 배선 및 배관-(1)	66	정미부싸이크론 헨-10HP-(1)
23	원료투입송강기-9ton/H-(1)	67	정미부싸이크론 및 헨-15HP-(1)
24	정선리턴송강기-3ton/H-(1)	68	가공실집진싸이크론 및 헨-30HP-(1)
25	현미송강기-9ton/H-(1)		
26	현미분리송강기-9ton/H-(1)		
27	현미리턴송강기1-3ton/H-(1)		
28	현미리턴송강기2-3ton/H-(1)		
29	현미석발송강기-6ton/H-(1)		
30	현미탱크송강기-6ton/H-(1)		
31	연삭정미송강기-6ton/H-(1)		
32	입형정미송강기-6ton/H-(1)		
33	백미석발송강기-6ton/H-(1)		
34	백미탱크송강기-6ton/H-(1)		
35	백미유량송강기-6ton/H-(1)		
36	로타리시후다송강기-6ton/H-(1)		
37	색채선별송강기-6ton/H-(1)		